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원 간첩수사권(대공수사권)부활에 관한 청원

국정원 대공수사(간첩수사)권 부활 및 강화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내란외환의 죄 등에 대한 수사를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규정〉

- 장동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30호)
- 장종환외 50,580인(청원번호 제2200113호)
- 박채영외 51,044인(청원번호 제2200152호)

2025. 9.

정 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개요	1
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국정원 간첩수사권(대공수사권)부활에 관한 청원	2
3. 국정원 대공수사(간첩수사)권 부활 및 강화에 관한 청원	3
II . 검토의견	5
1. 개정 취지	5
2. 법률 개정 연혁	9
3. 개정 필요성 여부	12
※ 참고자료	19
1. 국가정보원 수사권한 개정 연혁	19
2. 외국 정보기관의 수사권 · 조사권 보유 현황	22

I. 개 요

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발의자 : 장동혁 · 김도읍 · 김소희 · 박정하 · 박덕흠 · 서범수
김상훈 · 인요한 · 광규택 · 조배숙 · 이인선 · 백종현
정점식 · 김 건 · 이성권 · 신성범 · 유상범 의원(17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0.

(3) 회부연월일 : 2024. 11.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오랜 기간 대공수사를 전담해 왔으나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도록 한 법률 개정예 따라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 대공수사 역량은 현격히 저하되고,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국정원의 수사경험 등이 그대로 사장되는 등 심각한 안보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29호)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국정원 간첩수사권(대공수사권)부활에 관한 청원

가. 청원경위

- (1) 청원인 : 장종환외 50,580인
- (2) 접수연월일 : 2025. 2. 19.
- (3) 회부연월일 : 2025. 2. 20.

나. 청원의 취지

북한 지령 받은 간부들이 개입한 민주노총 간부들이 많아지고 있어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하여 이 땅에 있는 간첩을 잡아야 함.

다. 청원 내용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간첩으로 또 잡혔습니다. 하지만 불구속기소로 아직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의 국가이며 아직 휴전국입니다.

국정원 간첩수사권을 부활해야 됩니다.

3. 국정원 대공수사(간첩수사)권 부활 및 강화에 관한 청원

가. 청원경위

(1) 청원인 : 박채영외 51,044인

(2) 접수연월일 : 2025. 3. 28.

(3) 회부연월일 : 2025. 3. 31.

나. 청원의 취지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겨버렸는데,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체를 와해시키려는 위험천만한 불법한 행위로 원래대로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국정원법 제1조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게 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었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의정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 청원 내용

국정원은 오랫동안 집약된 정보를 토대로 그동안 수많은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간첩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국내 내사와 수사, 해외 내사, 과학 수사, 북한 정보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국정원에서는 63년간 위와같은 축적된 간첩 수사 역량을 발휘하며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반면, 경찰이 단기간에 이를 전수받는 건 불가능하며, 현 국정상태에서 국정원의 역량이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안보 방첩업무의 정상화를 위한 청원으로

(1) 정부당국과 정치권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원상복구하여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복구하여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2) 북한과 내통하여 국가의 정보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간첩행위 등에 대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3) 간첩색출에 검찰, 군, 경 및 국정원의 통합특별수사기구를 창설해야 합니다.

(4) 반국가 및 반정부활동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하는 불법단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조속한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II.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2020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으로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해당 죄에 대한 정보 수집·작성·배포 및 대응조치를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규정하며 경찰로 수사권이 이관되면서, 동 개정규정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해당 죄에 대한 수사를 다시 포함시키고,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복원시키려는 것임.

청원 2건은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복원을 위하여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4조(직무) ①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생략) ② 직원은 <u>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u>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국정원은 <u>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u> 에 관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4조제1항제1호나목과 마목</u> ----- ----- ----- ----- ----- ----- ----- ③ ----- <u>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u> ----- ----- -----

현행	개정안
하고,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3조(직권 남용의 금지) (생략) <u><신설></u>	-----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국정원 직원으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u> 1. 「형사소송법」 제34조와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7조, 제89조 및 제90조 2. 「군사법원법」 제63조와 같은 법 제232조의6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7조, 제129조 및 제130조 <u>제19조의2(사법경찰권) 국정원 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4조제1항제3호의2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u>
<u><신설></u>	

현행	개정안
제22조(직권남용죄)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법원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 설>	제22조(직권남용죄) ① 제13조제1항을----- ----- ----- ----- ----- ----- -----.
	②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정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진료,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견·진료,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2. 법률 개정 연혁

정보 기능은 정보의 수집·분석 및 배포를 통하여 정책집행기관의 정책 실행을 지원하는 기능이며, 법집행 기능은 경찰기관, 형사사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이 범죄증거의 수집, 피의자의 체포·기소 및 처벌 등을 주 임무로 하는 정책 실행 기능임¹⁾.

<정보활동 및 수사활동의 구별>

구분	정보	수사(법집행)
목적	국가안보 정책(대북, 외교)에 기여	범죄인 기소
비밀성	비공개	판결시 공개, 민감정보 공개 불가피
합법성	경우에 따라 해외에서의 불법 정보활동도 용인(예: 비밀공작)	엄격한 법적용, 불법시 무효
주요 내용	비밀공작, 수집, 분석, 방첩	첩보수집, 구금, 증인 신문 등

자료: 석재왕,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의견」,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 정보위원회, 2018, p.30.

한국의 경우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정보와 수사 기능이 융합된 기관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폐지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법률 개정 연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기관의 수사권은 1961

1) 김형욱, 「국가정보환경의 변화와 정보·수사기관의 역할 비교연구」, 『한국테러학회보』 제10권 제3호, 한국테러학회, 2017, p.55.

년 6월 10일 제정된 「중앙정보부법」에 규정되어 중앙정보부 창설 시부터 부여되었는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함.

1963년 12월 14일 「중앙정보부법」 전부개정으로 “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이적의 죄·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1973년 일부개정 시 새로 제정된 군사기밀보호법을 추가함)를 하도록 대상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제15조) 규정을 신설하여 수사권 행사의 주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1994년 1월 5일 「국가안전기획부법」 일부개정으로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중 제7조(찬양·고무죄), 제10조(불고지죄)에 규정된 죄는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직권남용 금지 규정(제11조)과 함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변호인 및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제19조)이 신설됨. 다만,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불고지죄는 1996년 12월 31일 「국가안전기획부법」 일부개정으로 다시 포함됨.

2020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수사 대상이었던 내란·외환의 죄, 반란·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²⁾에 관한 정보 수집·작성·배포를 하도록 하며, 수사권의 원만한 경찰로의 이관과 안보 공백 방지를 위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음. 수사권 조항 삭제는 대공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 권한 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의 우려가 있어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정보 관련 업무로 한정하려는 취지였음³⁾(<참고자료 1> 국가정보원 수사권한 개정 연혁 참조).

2024년 1월 1일 수사권 폐지 후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⁴⁾에 따라 안보침해행위 관련 범죄정보의 수집·작성·배포, 북한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안보 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시행 중임.

2) 다만,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의 경우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로 한정함.

3)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개정이유

4)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가. 나. (생략)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마. (생략)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3. 개정 필요성 여부

개정안에 대하여 ㉠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 종전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⁵⁾, ㉡ 과거 정보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증거조작 사례 등 불법적으로 자행되었던 수사방식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으며⁶⁾, ㉢ 정보기관이 엄격한 형사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 수사권을 보유하면 그 밀행적 특성 때문에 인권 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준수 여부의 통제가 어렵고⁷⁾, ㉣ 동일한 기관 내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이 존치될 경우 비밀공작 등 정보업무의 비윤리적 활동에 영향을 받아 수사 활동이 왜곡되거나 불법적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으며⁸⁾, ㉤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경찰에 이첩하고 경찰이 이를 토대로 대상자를 구금·신문하여 수사업무를 이행하면서,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을 통하여 경찰의 역량을 보완하고 수사기능의 약화를 방지할 수 있고⁹⁾, ㉥ 영국(SIS)·독일(BND)·일본(내각정보조사실)¹⁰⁾ 등은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부여

5) 장동엽, 「국가정보원, 더 꼼꼼하고 더 촘촘한 입법으로 묶어야 한다」,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 자료집』, 국회의원 기동민·김남국·김병기·김의겸·박범계·박주민·윤건영·최강욱·국정원감시네트워크, 2023, p.92.

6) 채성준·임석기, 『정보기관 수사권에 대한 연구: 주요국 사례를 통해서 본 국가정보원 안보수사권 필요성을 중심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글로벌정부정책연구원, 2018, p.109.

7) 석재왕,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의견」,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 정보위원회, 2018, p.30. 및 조지훈, 「국가정보원의 반개혁적 퇴행에 대한 짧은 검토: 신원조사와 수사권 문제를 중심으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 자료집』, 2023, pp.38~39.

8) 석재왕, 전제서, p.30.

9) “이 경우 국정원 대공업무는 대북방첩활동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현재 국정원이 입수한 산업보안 첩보를 검·경에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석재왕, 전제서, p.32.)

10) SIS: 영국 비밀정보부(Secret Intelligence Service, 일명 MI6)

BND: 독일 연방정보국(Bundesnachrichtendienst)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됨.

반면, ㉠ 남북분단이 지속되고 있고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 사이버공격, 외국인·탈북자를 위장한 간첩활동 등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¹¹⁾, ㉡ 북한의 대남공작이 제3국을 통한 우회침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해외정보망을 가지고 있고 외국 정보기구와의 공조가 용이한 국가정보원이 수사권을 보유하는 것이 효율적이며¹²⁾¹³⁾, ㉢ 경찰은 대북·해외·과학정보 수집·분석 역량 및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¹⁴⁾ 공개 조직으로 직렬 간 인사 이동이 차단되어 있지 않아 장기간 내사 및 수사보안 유지가 어렵고¹⁵⁾, ㉣ 정보·수사기관의 특성상 업무를 분리할 경우 차단의 원칙, 기관 간 경쟁, 출처 보안 또는 정보원 보호 등의 이유로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¹⁶⁾, ㉤ 국가정보

11) 채성준,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의견」,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 정보위원회, 2018, p.47.

12) 한희원, 「국가정보원 수사권에 대한 법적·제도적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제10권 제2호, 한국테러학회, 2017, p.108.

13) “경찰은 국내 법집행기관이어서 국제법상 외국에서의 공권력 행사(정보수집, 수사활동)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행위는 주재국의 주권 침해를 구성한다. 그리고 경찰이 해외정보 수집망을 구축하고 해외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 국내법(정부조직법) 체계상으로도 불가능하다.” (정구영,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당위성」,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국회 안보토론회 자료집』,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의원실 및 사단법인 양지회, 2023, p.54.)

14) “간첩은 날로 진화되어 고도의 과학적 방법인 스테가노그래피, 사이버드보크 등으로 통신연락을 하고 있어 웬만한 해독능력으로는 어렵고, 고가의 첨단장비나 숙련된 암호해독 전문가가 투입되어야만 난수를 풀 수가 있다. 경찰의 역량으로는 대공 과학정보 수집과 분석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황홍익,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등 법률관련 방안」,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긴급토론회 자료집』, 장동혁의원실, 2024, p.23.)

15) 김은영,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문제점」,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긴급토론회 자료집』, 장동혁의원실, 2024, p.13., 제성호, 「현행 대공수사권 유지의 당위성 및 경찰 이관시 문제점」,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 무엇을 위한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모임, 2020, pp.99~100. 및 황윤덕, 「국가정보원법 개정 관련 의견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국회 정보위원회, 2020, p.76.

16) 이재교,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국회 정보위원회, 2020, p.32., 채성준, 전게서, p.47. 및 황윤덕, 「국가

원의 수사권 보유에 따른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 우려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적법절차 준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고¹⁷⁾, ④ 미국(FBI¹⁸⁾), 프랑스(DGSI), 이스라엘(ISA)¹⁹⁾ 등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한 국가도 있으며(<참고자료 2> 외국 정보기관의 수사권·조사권 보유 현황 참조) 세계적으로 국가안보 위해 사범에 대한 정보와 수사 영역의 융합 경향이 존재한다²⁰⁾는 의견도 제시됨.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청의 조직·인력 개편 현황을 보면, 경찰청은 법률 개정에 따른 대공수사 전담체계 확립을 위하여 2021년 1월 기존 보안국을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2023년 10월 자체 인력조정을 통해 수사관 392명을 증원하여 본청에 안보수사단을 구성(49명 → 142명)하고 시·도청 수사인력을 확충(299명)하였다는 설명임. 또한,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업을 통해 수사인력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임²¹⁾.

다만, 경찰의 안보수사관 증원에 대하여 기존 경찰서 안보과를 폐지

정보원 개혁에 대한 의견」,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 정보위원회, 2018, p.96.

17) 채성준·임석기, 전거서, p.112.

18) FBI의 경우 대량살상무기, 테러공격, 외국의 정보공작, 간첩활동 등 4대 분야에서 정보활동과 수사역량이 통합되어 전개됨(이경렬·배수용, 「경찰활동의 수사와 정보 분리에 관한 법제의 비교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제63호, 대검찰청, 2019, p.210.).

19) FBI: 미국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DGSI: 프랑스 국내안보총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ISA: 이스라엘 보안정보부(Israel Security Agency)

20) 채성준·임석기, 전거서, p.109. 및 한희원,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보·수사 융합에 대한 법규법적 연구: 전쟁에서 국가안보사범과의 전투로」, 『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법학회, 2017, p.296.

21) 경찰청,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제출 자료」, 2025. 1.

하고 조직개편을 통하여 안보수사국과 안보수사단에 재배치한 것으로 실제 전문성 있는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안보수사국 내에 전문성 있는 수사관이 부족하여 기존 안보과에 근무한 수사관들 외에 보직 공모를 통해 일반 수사 경과자들로 충당하는 등 안보수사 관련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됨²²⁾.

다음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간의 협력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현황을 보면, 국가정보원이 진행했던 사건은 2023년 12월까지 이관을 완료하였고, 2024년 1월 1일부터 북한 간첩 신원 등 경찰이 요청한 정보 또는 자체 입수한 첩보를 경찰청 및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수시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수집 및 이관 현황 등 세부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료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안보범죄 관련 사건 수사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경찰청은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총 437명을 검거하였으며, 이 중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22명은 국가정보원과의 합동수사를 통하여 검거하였음.

22) “예를 들면, 현재 전국의 안보경찰은 약 2300여명. 이 중 수사인력을 30%에 불과, 그 외는 행정지원(기획·분석)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인력. 지방청 중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을 제외한 대부분 안보수사대의 인력 20명 이하; 새롭게 충원된 인력의 70% 안보 수사 무경험, 팀장급 80% 간첩 수사무경험. 경찰의 일선 ‘안보과’ 폐지조치로 서울 31개 경찰서 중 단 6곳(중부, 종로, 남대문, 용산, 강남, 수서)에만 안보과를 유지하고 이 외의 경찰서는 ‘경비안보과’ 또는 ‘안보정보과’ 등 타 기능(부서)와 통합한 후 ‘안보계’로 경화되고 업무가 증가하는 등 기존의 촘촘한 일선경찰서의 현장에서 정보수집기능 상실- 하부조직에서 수집되어 상부로 올라가는 공안정보의 기능에 공백이 생긴 상황”(김은영,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문제점」,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긴급 토론회 자료집』, 장동혁의원실, 2024, p.13.)

<경찰청 검거 현황>

구분	군사기밀보호법(명)	국가보안법(명)	계(명)
2014년	-	66	66
2015년	-	62	62
2016년	-	60	60
2017년	1	45	46
2018년	-	15	15
2019년	-	12	12
2020년	4	13	17
2021년	6	27*	33
2022년	2	30*	32
2023년	10	48*	58
2024년 10월	6	30	36
계	29	408	437

주: 1) 「형법」(내란죄, 외환죄), 「군형법」(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 위반 검거 실적은 없음.

2) *는 국가정보원 합동수사 2021년 5명, 2022년 1명, 2023년 16명 포함 인원임.

자료: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2015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총 65명(간첩 20명, 정보사범 45명)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외국 연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범 총 12명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 및 이첩하였음.

종합해 보면 개정안 및 청원들의 취지에 따라 국가정보원에 대하여 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의견, 종전의 수사권 폐지의 취지, 안보환경

및 안보수사의 특수성, 국가정보원·경찰청의 수사역량 및 협력체계 구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국가정보원은 2024년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이후 정보수집·작성·배포 및 조사권 행사 등 주어진 권한 내에서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에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중으로 오랜 기간 쌓아온 독보적인 대북·해외·과학 정보역량, 외국 정보·수사 기관과의 협조 네트워크 및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에 노하우 전수 및 협조체제 구축 등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른 기능과 역할 변화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다는 입장임.

경찰청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다는 입장임²³⁾.

한편, 개정안은 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하면서 전부개정 당시 삭제되었던 사법경찰권(안 제19조의2), 사법경찰관리의 적법절차 준수 의무(안 제13조제2항)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안 제22조제2항)을 신설하고 있으며, 전부개정 시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신설한 조사권²⁴⁾의 경우 안보범죄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직무 수행 시에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3) 경찰청,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회신」, 2024.12.

24) 「국가정보원법」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생략)

② 직원은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국정원은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관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법경찰권 관련 규정 신설 방안의 경우, 「형사소송법」²⁵⁾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를 요하는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의안번호 제2205731호 및 제2205729호)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 6788-5614

25)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참고자료

1. 국가정보원 수사권한 개정 연혁

근거	규정
「중앙정보부법」 (법률 제619호, 1961.6.10. 제정)	제1조(기능) <u>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u> 국내외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각부정보수사활동을 조정감독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이하 최고회의라 칭한다)직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 제6조(수사권) ① 중앙정보부장, 지부장 및 수사관은 소관업무에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갖는다. ② <u>전항의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한다.</u>
「중앙정보부법」 (법률 제1510호, 1963.12.14. 전부개정)	제2조(직무) ① 정보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 및 시설과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3. <u>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이적의 죄·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u> 4. <u>정보부직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u>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감독 ② (생략) 제15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정보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동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죄와 직원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군법회의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중앙정보부법」 (법률 제2590호, 1973.3.10. 일부개정)	제2조(직무) ① 정보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 및 시설과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근 거	규 정
	3. 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이적의 죄·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u>군사기밀보호법</u>·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4. 정보부직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감독 ② (생 략)
「국가안전기획부법」 (법률 제4708호, 1994.1.5. 일부개정)	제3조(직무) ① 안전기획부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u>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u> (다만, 제7조, 제10조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에 대한 수사 4. 안전기획부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② (생 략) 제11조(직권남용의 금지) ① 부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및 제209조에 의하여 수사에 준용되는 제87조(구속의 통지),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제90조(변호인의 의뢰)와 군사법원법의 관계규정(제63조·제127조·제129조 및 제130조)등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직권남용죄)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과 7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변호인의 피의자와의 접견·교통·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

근 거	규 정
	년 자의 피의자와의 접견·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안전기획부법」 (법률 제5252호, 1996.12.31. 일부개정)	제3조(직무) ① 안전기획부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u>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u>에 대한 수사 4. 안전기획부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② (생략)
「국가정보원법」 (법률 제17646호, 2020.12.15. 전부개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u>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u>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2. ~ 6. (생략) ② ~ ④ (생략)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 외국 정보기관의 수사권·조사권 보유 현황

□ 수사권 보유 국가 현황 : 50개국(가나다 순)

연번	국가명	형태	해외	국내	세부권한
1	가나	분리	RD (해외조사청) * 조사권	NIB (국가정보부) * 수사권	-국제범죄, 테러리즘, 마약 등 위협 감시 및 예방조치 수행 -범죄혐의자 체포·구금·조사 권한
2	나이지리아	분리	NIA (국가정보부) * 조사권	DSS (국가보안부) * 수사권	-테러리즘, 반란, 간첩행위 등 국가 차원 범죄 탐지·예방· 차단 -혐의자 대상 정보수집·미행 감시·체포·구금·압수수색 등 포괄적 수사권
3	노르웨이	분리	NSM(국가보안부) * 조사권 NET (해외정보부) * 조사권	PST (보안경찰청) * 수사권	-대테러·방첩업무 포함 국익 위해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테러리스트 등의 활동 감시 및 내사(도감청·금융정보 조회)
4	대만	분리	NSB (국가안전국) * 조사권	MJIB (조사국) * 수사권	-「국가정보공작법」·「법무부 조사국조직법」에 의거 포괄적 수사권 보유 -다만, 기본적으로 관할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련 범죄 수사
5	덴마크	분리	FE (국방정보부) * 권한 ×	PET (보안정보부) * 수사권	-「형법」상 반역죄 및 국가 독립·안보에 반하는 범죄, 헌법 및 국가권위에 반하는 범죄 등 수사
6	라오스	통합	MPS(공안부)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안정을 위한 조사·체포·구금 등 포괄적 수사권
7	라트비아	분리	SAB(헌법보호청) * 조사권	VDD (국가보안청) * 수사권	-「국가안보기관법」·「수사 활동법」등에 따라 방첩, 대테러, 경제안보, 헌법질서수호 등 직무범위 관련 정보수집 및 수사권한 보유
8	러시아	분리	SVR (해외정보부) * 조사권	FSB (연방보안부) * 수사권	-방첩, 조직범죄, 테러, 부패, 무기·마약류 거래 관련 공작 업무를 수행하며 심문 및 수사권 보유 -업무 범위내 안전보장을 목적 으로 감청·개인정보 수집 가능
9	레바논	통합	LAF(軍 정보국)	SS(국가보안부)	-대테러 및 방첩 -외국인 및 외국과 관련된 내국인 감시 -국가안보 저해 사범 색출 및 수사

연번	국가명	형태	해외	국내	세부권한
10	르완다	통합	NISS(정보보안부)		-안보관련 국내외 정보활동 일체 및 사법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이 정한 범위내 조사권·수사권 행사
11	말라위	통합	NIS(국가정보부)		-포괄적 수사·조사권
12	말레이시아	분리	MEIO(해외정보부) * 권한 ×		-2012년 국가안보법」을 「안보위협특별조치법」으로 대체, 국가안보 위협사항에 대한 조사·수사·체포·구금 등 포함
				SB (특수임무부) * 수사권	
13	몽골	통합	GIA(몽골정보부)		-체제전복, 테러, 국가기밀 유출 등에 대한 수사 -피의자·혐의자에 대한 수색 및 임시구속·조사 가능
14	미국	분리	CIA (중앙정보국) * 조사권	FBI (연방수사국) * 수사권	-대테러 업무 및 방첩, 수사에 중점 -강제수사 권한을 포함한 수사권 및 감청·금융정보 조회 등 개인정보 수집·조사 권한 포함 조사권 보유 · 연방법 저촉행위 수사 · 외국 정보기관 위해행위 탐지 · 자국내 테러행위, 사이버 범죄, 조직범죄 관련 정보수집 및 수사 · 연방 형사법 위반 공무원들의 부패범죄·혐의 수사 -수사권·조사권 모두 영장 청구를 통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인·감독
15	미얀마	통합	OCMSA(軍 정보부)		-군 관련 수사·방첩 등 보안 업무, 국내외 안보·테러·범죄 정보 수집 및 별도 구금시설 운영
			SB(경찰특수부)		-국내외 정보수집·처리, 외빈 경호, 국경보안 기능 등 수행
16	민주콩고	통합	ANR(국가정보부)		-국가안보범죄 관련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권 보유
17	방글라데시	통합	NSI(국가정보부)		-안보, 외사·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국내정치 범죄 등 광범위한 수사권
18	베네수엘라	통합	SEBIN(국가정보부)		-국가안보보장을 위한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 수행
19	베트남	통합	MPS(공안부)		-국가안보 포함 일반 형사범죄 및 사법기관 직원의 부패·직권남용까지 광범위한 수사·조사권(군 관련 범죄수사 제외) -체포·구금 및 주거지·서신·통화·데이터 등에 대한 수색
20	벨기에	분리	SGRS (정보안전총국) * 조사권	VSSE (국가안전부) * 수사권	-국가안보 관련 가택수색, 감청, 우편물 확인, 컴퓨터 점거, 소지품 검색, 통신·금융정보 등 수집

연번	국가명	형태	해외	국내	세부권한
21	벨라루스	통합	KGB(국가보안위원회)		-국가안보 위협 · 범죄 관련 수색 · 체포 · 심문 · 감청 등 활동 수행 보장
22	불가리아	분리	SIA (해외정보청) * 조사권	SANS (국가안보청) * 수사권	-국가안보 위협 사항에 대해 감시 · 통제 · 정보수집 등 가능 · 안보 위협 추정 대상자 소환 및 최대 24시간 구금 가능
23	브루나이	분리	BRD (해외정보청) * 권한 ×	BISD (국내보안청) * 수사권	-「국가보안법」에 따라 국가 안보 위협사항에 대한 조사 · 수사 · 체포 · 구금 등 가능
24	사우디	분리	GIP (국가정보부) * 조사권	SSP (국가안보부) * 수사권	-국내 치안, 테러, 반체제 인사 수사 · 체포 -테러 용의자 수사 · 체포 · 심문 · 기소
25	세르비아	통합	BIA(국내정보부)		-조직범죄, 테러, 국가내란 등에 대한 수사권
26	스웨덴	분리	MUST (軍 정보부) * 권한 ×	SAPO (보안경찰청) * 수사권	-테러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 -SAPO 사건 담당 검사 별도 지정
27	싱가포르	분리	SID (해외정보청) * 권한 ×	ISD (국내보안청) * 수사권	-간첩, 부정부전복, 대테러, 내란 등 국가안전 · 공공질서를 위태 롭게 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 -필요에 따라 재판 없이 위협 인물을 예방 차원에서 구금할 수 있는 권한 -예방적 구금 외 활동 · 직업 · 거주지 제한, 통행금지 시간 설정, 이동통전 통보, 공개활동 금지, 출국금지 등 다양한 조치 가능
28	아랍 에미리트	분리	NIS (해외정보부)	SSD (국가보안부)	-내란, 폭동 등 국가안보 및 테러 관련 수사 · 조사권 -구금 · 강제조사, 검문 · 수색 및 체포 · 조사(영장 불요), 24시간 구금(부장 승인에 따라 90일까지 연장 가능)
29	아제르바이잔	분리	FIS (해외정보국) * 권한 ×	SSS (국가보안부) * 수사권	-테러, 국가기밀, 방첩, 종교적 극단주의 등 국가안보 사안 -검색 · 신원확인 · 포렌식 · 통신감청 · 수사 · 체포 · 구금 · 특수작전 수행
30	에스토니아	분리	EFIS (해외정보청) * 조사권	KAPO (보안경찰청) * 수사권	-국가안보, 헌법질서보호, 대테러, 방첩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권한 -「경찰국경수비대법」상 국내 직무범위 사안에 대한 수사
31	에티오피아	통합	NISS(국가정보안전부)		-테러, 정부전복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해 체포 · 구금 등 포괄적 권한 -가담 의심자에 대한 사찰 권한

연번	국가명	형태	해외	국내	세부권한
32	오만	분리	GSLC (해외정보부)	ISS (국내정보부)	-국가안보 관련 심각한 사건의 경우, 해외정보부 수사권이 우선 발동 -상황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도하 ISS 관여
33	오스트리아	분리	HNA (軍 전략정보청) * 권한 ×	DSN (국가안보정보청) * 수사권	-국가안보 위협사항(테러, 극우 주의, 스파이행위 등)에 대해 감청·압수·수색·체포·구금 등 직접 수사 가능
34	요르단	통합	GID(국가정보부)		-대테러, 국가안보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조사권한 -자체 구금시설 보유
35	우즈베키스탄	통합	SSS(국가보안부)		-「SSS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청·금융정보 조회, 압수수색·구금, 개인정보 수집조사 권한 등 포괄적 수사·조사 권한
36	우크라이나	분리	SBU(보안부) * 수사권		-국내정보, 방첩, 대테러, 국가안보, 경제, 사이버, 부패, 조직범죄 등에 대한 수사
			SZRU (해외정보부) * 권한 ×		
37	이스라엘	분리	ISIS (비밀정보부) * 권한 ×	ISA (보안정보부) * 수사권	-국가안보·질서·체제 훼손 관련 피의자 수사, 국경 정보 활동을 위한 신체·소지품 검색, 통신데이터 수집 등
38	이집트	분리	GIS(국가정보부)		-국가안보 등 특정범죄 관련 피의자에 대한 감시·압수·수색·체포·구금 등
				NSS (국가보안청)	-테러, 무기밀반입, 반체제, 방첩 등 범죄 관련 수사권 보유
39	잠비아	통합	ZSIS(보안정보부)		-포괄적 수사·조사권
40	조지아	분리	GIS (해외정보국) * 권한 ×	SSS (국가보안부) * 수사권	-심문, 소환, 신원조회, 일반·특별수색, 구금, 체포, 포렌식 등 -물리력 행사 및 특수장비(총기 등) 사용
41	중국	통합	MMS(국가안전부)		-국내외 국가안보와 관련된 광범위한 수사·조사 권한 보유 -2023.7. 「반간첩법」 개정 후 권한 확대: 신체·소지품 등 수색, 소환·심문, 개인정보 조회 등 -「국가안전법」(2015.7. 제정)에 따라 국가안보 관련 정보수집·수사·구류·예심·체포 및 여타 법률이 정하는 기타 권한 행사
42	짐바브웨	통합	CIO(중앙정보부)		-포괄적 수사·조사권
43	카자흐스탄	통합	NSC(국가보안위원회)		-국가전복, 간첩, 테러, 국제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 포함) 및 조사권

연번	국가명	형태	해외	국내	세부권한
44	캐나다	분리	CSIS(보안정보부) * 조사권		-각종 범죄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증거수집 및 조사 -감청, 금융정보 조회, 개인정보 수집 권한 등 포괄적 수사·조사권
				RCMP (연방경찰) * 수사권	
45	쿠웨이트	통합	KSS(보안청)		-국가안전 관련 조정권 보유 -반체제, 대테러, 사이버범죄 관련 첩보수집 및 수사
46	키르기스스탄	통합	SCNS(국가보안위원회)		-정보수집·분석·검증·예비 조사·수사 및 기소 준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특히 국가안보 직결 사건은 타 수사기관보다 우선권 확보
47	타지키스탄	통합	SCNS(국가보안위원회)		-감청·금융정보 조회, 압수수색·구금, 개인정보 수집조사 권한 등 포괄적 수사·조사권
48	탄자니아	통합	TISS(정보보안부)		-국가안보 위협자 수색 및 테러 혐의자에 대한 체포·구금 권한 등 수사와 감청·금융 정보 조회 등 조사 가능
49	폴란드	분리	AW (해외정보부) * 조사권	ABW (국내정보부) * 수사권	-형소법에 따른 피의자 구금 및 신체·건물 수색 -개인 소지물 및 지상·해상· 항공 등 운송수단 적재 수화물 검색 -법률상 명기 상황하 직접 강압·총기사용 및 체포 가능
50	프랑스	분리	DGSE (해외안보총국) * 조사권	DGSI (국내안보총국) * 수사권	-방첩, 국가비밀 침해, 반확산 등 분야 수사권 보유 -국가안보 및 근본적인 국가 이익 분야 일반적 정보권한 (조사권) 보유

주: 2025년 3월 기준 자료임(이하 같음).

자료: 국가정보원

□ 조사권 보유 국가현황 : 26개국(가나다 순)

연번	국가명	형태	해외	국내	세부권한
1	남아프리카 공화국	통합	SSA(국가안전부)		-지정된 판사 승인(문서)시 「정보통신법」 등 여타 법률 준수하 조사 가능
2	네덜란드	통합	AIVD(보안정보부)		-민주적 법질서의 존립, 안보, 국가 주요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조직·인원 조사 -보안사고 조사 -비밀취급 보안업무 종사 공직자· 민간인 대상 신원조사 등
3	네팔	통합	NID(국내보안청)		-국내보안, 방첩, 대테러, 국제 범죄 등 국가안보 위협 관련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포괄적 조사권 · 정보수집·분석·체포·법 집행기관 및 수사기관 협력 등
4	니제르	분리	DGDSE (해외안보총국)	DGSI (국내안보총국)	-[DGDSE] 국내·해외정보 및 안전 관련 정보수집, 외국 정보기관 협력 등 -[DGSI] 국내정보 수집 및 대테러·방첩
5	도미니카 공화국	통합	DNI(국가정보부)		-국가안보 범죄 관련 조사권 이 있기는 하나 실제 행사는 매우 제한적 -검경 협조하 조사·수사·체포· 기소 등 수행
6	독일	분리	BND (연방정보부)	BfV (연방헌법 보호청)	-[BND] 정보적 수단을 활용한 개인 데이터 등 정보 비밀수집, 필요시 정보원 활용, 감시, 촬영, 녹음 등 비밀 정보수단 활용 가능, 감청 등 -[BfV] 국가안보위해 혐의자· 조직 대상 금융정보 조회· 추적, 개인정보 수집, 통신제한 조치(감청) 등
7	루마니아	분리	FIS (해외정보부)	RIS (국내정보부)	-[FIS] 국가안보 관련 정보 수 집·확인·보호·평가·이용 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 협조요청 가능 -[RIS] 감청, 개인정보 조회,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 협조 요청 가능
8	스위스	통합	FIS(연방정보부)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있을 경우 감청·개인 정보 조회·위치 추적 등 가능 (사전 사법승인 조치 필요) -금융정보 데이터 조회·수집 권한 부여를 위한 「정보법」 개정 추진 중
9	스페인	통합	CNI(국가정보부)		-국가안보 관련 개인·단체에 대한 조사 및 공공·민간 기관에 협조요청 가능
10	슬로베니아	통합	SOVA(정보보안부)		-방첩, 대테러 관련 첩보 수집, 내사 활동 수행시 감청·금융 정보 조회 등 가능

연번	국가명	형태	해외	국내	세부권한
11	알제리	분리	DGDSE (해외안보총국)	DGSI (국내안보총국)	-[DGDSE] 외부 위협, 간첩 활동 및 테러 네트워크 조사 -[DGSI] 국가안보 위협 관련 제반 사항 조사 및 반정부 세력 감시
12	에콰도르	통합	CIES(전략정보원)		-「국가안보법」·「형법」·「불법 범죄 자금세탁 방지법」 등을 바탕으로 조사권 행사
13	영국	분리	SIS (비밀정보부)	SS (보안정보부)	-감청, 금융정보 조회 등으로 국가안보 위해 혐의자의 개인정보 등 수집·조사
14	인도	분리	R&AW (내각조사부) * 권한 ×	IB (국내정보부)	-체제전복 및 군부 쿠데타 기도 등 국내 보안정보 수집 -방첩·대테러·국경지역 정보수집 -해외 요인 방문시 경호 정보활동 조정 등
15	인도네시아	통합	BIN(국가정보부)		-국가이익·안보 위협 활동 등에 대한 감청, 자금흐름 조사, 정보수집 수행
16	일본	분리	CIRO (내각정보 조사실)	PSIA (공안조사청)	-[CIRO] 내각 중요 정책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조사에 관한 사무 관장 ·안보범죄의 경우 CIRO 소속 인원에 대한 조사 권한 보유 -[PSIA] 치안·국가안보상 위협에 대한 국내외 첩보수집, 정보활동은 가능하나 영장 청구·집행 등 권한 미보유 ·CIRO 등과 대테러 합동 활동 전개
17	체코	분리	UZSI (해외정보부)	BIS (국내정보부)	-[UZSI] 해외첩보 수집, 국가안보 범죄, 국제경제, 테러, 조직범죄 관련 첩보·정보수집 및 조사 -[BIS] 외국 정보기관 활동에 관한 방첩 첩보·정보 수집 및 조사, 테러 관련 첩보·정보 수집 및 조사
18	칠레	통합	ANI(국가정보부)		-국가안보, 테러, 조직범죄, 마약밀매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감시, 통신 감청 등 조사권 보유
19	캄보디아	통합	GDRI(정보조사총국)		-국가안보 관련 감청, 금융정보 조회, 개인정보 수집 등 포괄적 조사권
20	케냐	통합	NIS(국가정보부)		-해외·방첩정보 관련 정책결정·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수집 -현장조사·문서열람 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가능
21	태국	통합	NIA(국가정보부)		-국가안보범죄 및 안보위해 행위 등에 대한 조사권

연번	국가명	형태	해외	국내	세부권한
22	파라과이	통합	SNI(국가정보청)		-국가안보, 테러, 조직범죄, 마약 밀매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감시·통신감청 등 권한 보유
23	파키스탄	분리	ISI(국방정보부)		-국내외 정보활동·공작 수행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금융정보 조취·개인정보 수집 등 포괄적 권한
				IB (정보부)	-국내 정치, 테러리즘, 사회적 불안 등에 대한 정보수집 수행 -감청, 금융정보 조취, 개인정보 수집 등
24	핀란드	통합	SUPO(보안경찰청)		-국가안보 목적 통신정보(위치·이메일·감청·네트워크 등)·개인정보 접근 권한
25	헝가리	분리	IH (정보청)	AH (헌법보호청)	-[IH] 해외정보 수집·분석·평가, 외국으로부터의 주권 위협행위 탐지, 해외주재 자국 기관 보호, 신원 검증, 암호 사용 허가·감독 -[AH] 외국 정보기관의 위해 행위 탐지, 헌법질서 교란·불법행위 탐지, 경제·과학·기술·재정·안보위협 및 마약·불법무기거래 탐지, 신원 검증
26	호주	분리	ASIS (비밀정보부) * 권한 ×	ASIO (보안정보부)	-국익 및 안보위협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조사 임무 수행 -필요시 법무부 협조하 안보 위협에 대한 감청(통신·우편), 미행감시, 사이버점거, 가택 수색 등 업무 수행 · 직접적 수사권은 없으나, 경찰 협조하 법무장관으로부터 체포·구속 영장 발부 가능

자료: 국가정보원

□ 수사권 · 조사권 미보유 국가현황 : 9개국(가나다 순)

연번	국가명	형태	해외	국내	세부권한
1	멕시코	통합	CNI(국가정보청)		-국가안전보장 목적 정보수집·평가·분석 및 부처간 국가안보 활동 조정 -필요시 법원 허가에 따라 감청업무 수행
2	브라질	통합	ABIN(국가정보부)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 수집·분석 등 국가전략정보 생산 -방첩활동 수행 -외국과 정보협력 등 정보활동 총괄
3	세네갈	분리	DGRE (해외정보부)	DGRI (국내정보부)	-[DGRE] 대테러·국제범죄, 해외거점 운영 등 해외정보 업무 수행 -[DGRI] 국내 대테러·대국가 전복·경제보호·방첩 등 국내 정보 업무 수행(필요시 DGRE와 협업)
4	아르헨티나	통합	SIDE(국가정보부)		-국가정보체계상 정보기관 통제· 조정 -정보 통합, 방첩·테러예방 활동 지휘 -과거에는 사법당국 요청시 수사권이 예외적으로 부여되 었으나, 「법령 616/2024」 (2024.7. 시행)에 따라 폐지
5	이탈리아	분리	AISE (해외보안 정보부)	AISI (국내보안 정보부)	-[AISE] 국익 보호를 위한 해외 보안정보 활동, 국외 간첩· 국익훼손 활동 등 식별·대응, 전략물자 확산 방지 -[AIS] 국익 보호를 위한 국내 보안정보 활동, 국내 간첩· 국익훼손 활동 등 식별·대응
6	콜롬비아	통합	DNI(국가정보청)		-국가안보 관련 정보 수집·생산·배포 -외국 정보협력 포함 정보·방첩 활동
7	파나마	통합	CSN(국가안보위원회)		-국가안보 관련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첩보 생산 및 의사결정 사무국 기능 수행
8	페루	통합	DINI (국가정보부)		-국가안보 관련 정보분석·전략정보 작성 등 정책결정 지원 및 부문정보기관 조정
9	필리핀	통합	NICA(국가정보부)		-국가안보 관련 정보수집·분석·배포·조정 및 국가안보정책 결정 지원 -외국과의 정보협력 등 정보활동 총괄

자료: 국가정보원

